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2. 6.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아동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5. 1. 23.(목)
- 회부일자: 2025. 1. 23.(목)
- 상정 및 의결: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5. 2. 6.)

2. 제안이유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안)	운영방식	세대수
빌리브라디체 어린이집(가칭)	본동 760번지 (본동)	377.745m ² (지상1)	40명 (예정)	민간위탁	520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5년(준공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 자문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신규위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 본동 760번지 일원의 빌리브라디체 아파트는 총 520세대로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2025년 1월 14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2025년 1월 17일 설치·운영 협약서(안)을 체결하였으며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임.
- 보육 서비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